

뉴 - 스

A.L.A 第81次 年次大會

美國圖書館協會의 81次 年次會議가 6月 17일부터 23日까지 7日間 Miami Beach, Florida 에서 열렸다.

美國內 各級圖書館司書들과 圖書館學者들이 모여 研究發表와 實務報告로 圖書館全般的인 問題를 다루는 同大會의 今年度 題一하는 「圖書館人과 社會」라 한다.

I.F.L.A 28次 會議

瑞西 首都 Berne 에서 1962年 8月 27日 부터 31日까지 5日동안 「國立 및 大學圖書館」「編目原理의 統一性」「희구藏書 연합目錄」「公共 圖書館事業」등의 主題를 討議할 豫定이라 한다.

坡州圖書館 姊妹結緣

空軍中央圖書館과 坡州圖書館과의 姊妹結緣式이 6月26日 午前 10時 坡州圖書館에서 空軍中央圖書館館長, 國立圖書館館長 및 一線의 美軍人 多數의 貴賓을 모신 가운데 舉行하게 되었다 한다.

이 姊妹圖書館들은 앞으로 相互의 藏書를 有機的으로 貸出함과 同時 多方面에 걸친 相互의 協助가 굳게 結緣되어질 것이라 한다.

釜山市立圖書館 拏着工

同圖書館 設立委員會를 中心으로 推進해 오던 釜山市立圖書館은 釜山市田浦洞에 約千餘坪의 地를 마련하고 今年 一次

年度豫算 6百萬원으로 今月中 着工할 豫定이라 한다.

兒童 圖書館 講習會

國民學校 圖書館 設置를 勸奨하며 圖書館 運營에 必要한 基礎的인 事項을 提供하기 爲한 兒童 圖書館 講習會를 文教部 認定下에 피바의 教育使節團과 各道 教育課 共同 主催로 이미 大邱, 光州, 全州, 春川에서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7月 5, 6, 7日 3日間은 釜山大學校教育大學에서 7月 9, 10, 11日 3日間은 公州教育大學에서 各各講習會를 가질 豫定이라 한다.

敎課科目은:

도서관 조직 및 관리, 분류 및 편목, 도서 및 이용법, 아동도서 특강, 토의 및 평가, 계시판 및 전시.

地域社會 學校圖書館의 活動

오는 6月 28日, 釜山女子高等學校圖書館에서 釜山市內의 各學校圖書館 擔當司書敎師와 慶南道內 各市郡 學校圖書館 擔當獎學士가 한자리에 모여서 當面한 학교도서관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問題에 對한 協議가 있을 豫定이라 한다.

李載喆氏 歸國

本會의 理事이며 延世大圖書館學科專任 講師인 李載喆氏가 지난 6月 25日西北航空機便으로 歸國하였다.

氏는 작년 6월에 渡美하여서 그동안 미 시간大學 大學院에서 圖書館學을 연구하고 今般 歸國한 것이다.

情報媒介物保障計劃에 關한 協定施行令

第 1 條(目的) 本令은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情報媒介物保障計劃에 關한 協定(以下 保障計劃에 關한 協定이라한다)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本令에서 情報媒介物이라 함은 保障計劃에 關한 協定에 依하여 輸入되는 美合衆國(以下 美國이라한다)의 普通刊行物과 定期刊行物을 말한다.

第 3 條(公告) ① 文教部長官은 每年情報媒介物의 購買에 配定된 美貨額을 普通刊行物의 輸入用과 定期刊行物의 輸入用別로 公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普通刊行物의 輸入用과 定期刊行物의 輸入用의 美貨額의 比率은 9對1로하되 文教部長官은 必要에 따라 그 比率을 調整할수 있다.

第 4 條(情報媒介物의 輸入者) 美國輸出業者와 情報媒介物의 輸入契約을 締結할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

1. 教育機關및 公共의 圖書館
2. 國會, 法院 및 各級行政機關
3. 公共의 研究機關
4. 文教部長官이 認定하는 公共機關
5. 其他 文教部長官이 認定하는 團體 또는 個人

第 5 條(契約締結許可) ① 前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美國輸出業者의 情報媒介物의 輸入契約締結의 許可(以下 締約許可라한다)를 받고자하는 者는 別紙第1號書式에 依한 締約許可申請書에

別紙第 2號書式에 依한다 摺장을 添附하여 文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締約許可申請書에는 締約許可申請額을 美貨로 記載하여야 하되 每件事當 5百弗以上이어야 한다.

第 6 條(額買資金의 配定) ① 文教部長官은 前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締約許可申請額이 第3條의 公告額을 超過할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한 順位로 購買資金을 配定하되 同順位間에는 均配한다.

② 文教部長官은 前項의 配定을 完了하였을 때에는 그 締約許可額을 遲滯없이 申請人과 外國換銀行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7 條(輸入推薦) ①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締約許可를 받은 者가 情報媒介物을 輸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媒報媒介物에 對하여 文教部長官으로부터 輸入推薦을 받아야 한다. 但 情報媒介物이 定期刊行物인 境遇에는 文教部長官은 그 輸入推薦에 있어서 公報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前項의 輸入推薦을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第3號書式에 依한 外國書籍輸入推薦申請書에 別紙第4號書式에 依한 圖書目錄과 別紙第5號書式에 依한 다摺장을 添附하여 文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 8 條(원貨의 入金) ① 文教部長官의 締約許可와 輸入推薦을 받은 者는 配定된 締約許可額에 入金當時의 基準換率을 乘한 元貨額을 外國換銀行에 있는 輸出

業者名義의 外國人貨計定에 入金하여 야 한다. 但 情報媒介物을 締約許可額의 範圍內에서 分轄하여 輸入할 때에는 輸入時마다 그에 該當하는 貨額을 入金한다.

② 外國換銀行이 前項의 入金을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入金通知書를 美國輸出業者(預金主)와 駐韓美國大使館에 送付한다.

第9條(情報媒介物의 通關) ① 情報媒介物의 輸入通關은 文教部長官의 輸入推薦書와 外國換銀行의 契約確認書 및 入金證에 依하여 한다.

② 保障計劃에 關한 協定에 依하여 通關되는 情報媒介物에 關하여는 管轄稅

關長은 情報媒介物이 通關되는 即時로 外國換銀行의 長에게 通關畢通知를 하여야하고 이 通知를 받은 外國換銀行의 長은 이를 駐韓美國大使館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10條(入金된 貨의 使用)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入金된 貨는 前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通關畢通知가 있은 後 駐韓美國大使館이 이를 引出使用할 수 있다.

第11條(施行規則) 本令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文教部長官이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書式은 略하였음)

配 付 依 賴 出 版 物 目 錄

書 名	數 量	寄 贈 者
國際經濟月報(第2號)	(51部)	外 務 部
韓國의 標本調査機關(4輯)	(16〃)	經濟企劃院統計局
音響工學	(100〃)	公 報 部
법원공보 제207號	(14〃)	大 法 院
한국장해아동조사보고서	(215〃)	보건사회부한국아동복지위원회
韓國革命裁判史	(80〃)	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
연차보고서(1961)	(100〃)	한 국 산 업 은 행
大 戰 略 4月號	(19〃)	國 防 大 學 院
經濟開發5個年計劃解說(75號附錄)	(230〃)	韓國產業銀行企劃調查部
국립도서관보(1962.1~3월호)	(90〃)	국 립 도 서 관
조사월보(4)	(120〃)	韓 國 銀 行 調 查 部
경제통계연보 1962	(120〃)	"
產銀月報 3月號	(180〃)	韓 國 產 業 銀 行 調 查 部
조사월보 5	(120〃)	韓 國 銀 行 調 查 部
大 戰 略 5月號	(19〃)	國 防 大 學 院